

수익사업기금 운용 지침

This file is **guidelines for operation of the profit Business Fund of POSTECH.**

This contains **POSTECH's sustainable investment policy.**

Please check the **highlighted part.** (page 3, 9)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 목 차 -

1. 목 적	3
2. 기금관리의 원칙	3
3. 기금운용체계	3
4. 재정운영자문위원회	3
5.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4
6. 목표수익률	4
7. 투자대상 자산군	4
8. 자산배분	5
9. 거래금융기관 선정	5
10.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5
11. 위험관리	5
12. 성과평가	6
13. 기금관리 담당자의 의무	6
붙임 1 : 기금운용 프로세스	7
붙임 2 : 용어에 대한 정의	8
붙임 3 : ESG 투자시 고려사항	9
부칙	1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수익사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금운용의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Fund Management Principles

제2조 (기금관리의 원칙) 학교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 ①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안정적인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적정 유동성과 현금흐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를 통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④ 위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기금의 수익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ESG)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붙임 3]과 같다. **ESG factors can be considered to investment target. Factors are as shown in [Attachment 3]. (Page 9)**
- ⑥ 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은 기금관리주체인 법인본부의 책임으로 수행되며, 주요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기금운용 체계는 별첨과 같이 갖추고 운영한다.

제4조 (재정운영자문위원회)

- 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내.외부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내외 위원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재정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인 부이사장 또는 본부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재정운영자문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정책에 관한 사항(이사회 의결사항)
 2. 투자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장단기 배분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 투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목표수익률에 관한 사항
 6. 대학 적립기금의 금융상품 운용계획 공유

- ⑤ 재정운영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재정운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소속회사의 금융상품 논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재정운영자문위원회 회의시에는 해당위원은 배제한다.
- ⑦ 재정운영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법인은 매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방향 및 전략
 2. 자산 배분계획
 3. 자산별 세부운용계획
 4. 목표수익 및 수익률
- ③ 이사장은 위의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유동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목표수익률) ① 기금은 학교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 운용중인 상품의 운용수익률과 투자 대상 가능 자산군 기준으로 당해년도 운용 가능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 (투자대상 자산군) ① 법인 기금의 투자대상 자산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상품종류
원금보장형	채권(예금 포함)	국채, 은행예금, CD
원금 비보장형	채권(펀드)	채권(BBB 이상), CP(A2 이상), 특정금전신탁 신종증권(금리, 신용 연계 등 구조화상품)
	주식(펀드)	상장, 비상장주식 및 펀드
	대체 투자	부동산 부동산 외

- ② 상기 투자대상 자산군 분류상 사용되는 원금보장, 비보장, 대체투자 등에 대한 용어는 별첨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8조 (자산배분) ① 법인은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행하여 운용한다.

② 자산배분은 중.장기 목표(Target)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연도 기금운용 계획보고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거래금융기관) ① 기금의 거래대상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제 1금융권 : 대형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2. 제 2금융권 : 증권사, 자산운용회사(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제외)

② 금융기관과 거래시에는 결제집중, 신용위험집중, 거래기관의 유동성 집중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거래 금융기관별 예약한도를 기금원본의 20% 이내로 분산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증식의 기여도, 운용능력, 정보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수준, 업무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분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투자 다변화를 위하여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거래하되,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법인은 연도 기금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위탁운용사의 후보구성과 선정, 위험관리,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 등을 위하여 제4조 재정운영자문위원회 이외의 외부전문가 또는 자문기관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험관리) ① 기금의 위험관리는 기금운용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의 효율적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1차적으로 전문가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며 2차적으로 재정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② 투자자산별 손절매 기준은 주식, 주식형펀드, 채권 등의 평가손실액이 투자원금대비 30% 초과하여 하락할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손절매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장의 특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금운용시 발생가능한 위험에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 등이 있으며 각 위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 법인은 주요 위험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시스템 개발,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수시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정치.경제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손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간성과평가) ① 법인은 매년 기금운용 성과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지에는 자산 분류별(채권, 주식, 대체투자)로 당초 설정된 목표수익 및 수익률과 비교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기금관리 담당자의 의무) ①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관련 제반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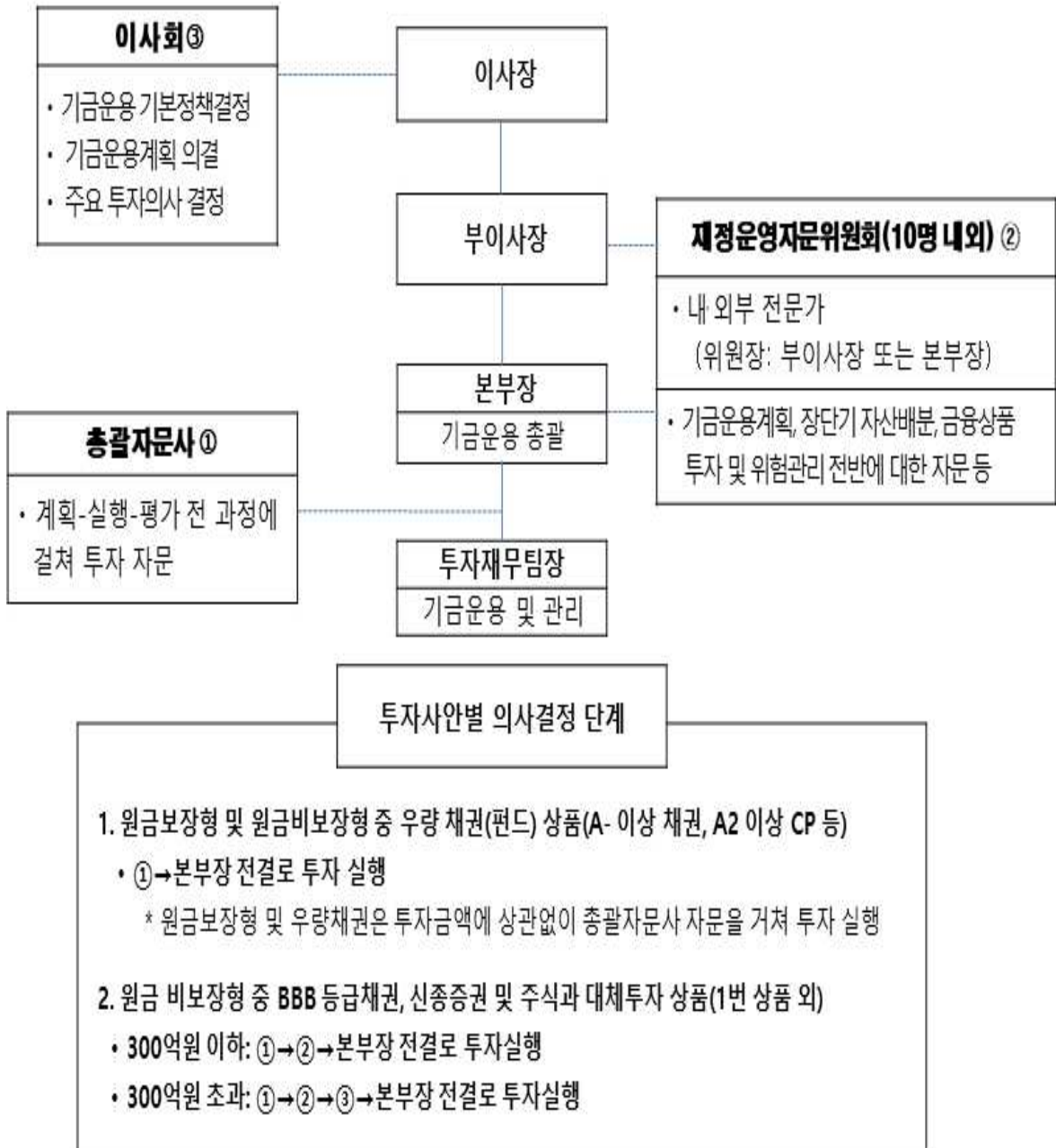
② 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붙임 1) 기금운용 체계

기금운용 프로세스



(붙임 2) 용어에 대한 정의

가. 제7조 투자대상 자산군 분류상 사용되는 용어

구 분	정 의
원금보장형/ 비보장형	정부발행 국채의 Default 위험, 예금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일정한도(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는 등 완전 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하여 이를 원금보장상품으로 분류하고 이외의 상품을 원금 비보장상품이라 한다.
특정금전신탁	신탁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신탁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내용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다. (채권 편입시 : 채권형 특금, 주식 편입시 : 주식형 특금)
신종증권	금리, 신용 등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가격, 지표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점에서는 채권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전환권 행사나 권리행사 이후에는 변경된 상품으로 분류한다.(예:CB 매수시→채권, CB를 주식으로 전환시→주식)
대체투자	채권(펀드), 주식(펀드), 부동산(펀드)와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대비되는 상품으로 SOC투자, 벤처투자, 사모투자, 선박펀드, 파생상품, 기업구조조정투자, M&A투자 등을 말한다.

나. 제11조 위험관리 종류 분류상 사용되는 용어

구 분	정 의
시장위험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위험 관리대상 자산은 주식, 채권, 신탁상품 등으로 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 금리변동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신용위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속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상황 변화, 보유 유가증권의 신용상태의 등급 변화 등을 점검한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선택시 해당기업의 재무구조, 시장 평균 거래대금 등을 사전 확인 후 결정한다.
법규위험	법 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기금이 손실을 입게될 위험을 이야기한다.
운영위험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되는 위험을 말한다.

(Attachment 3) List of considerations for ESG investment

(붙임 3) ESG 투자시 고려 대상 리스트

구분	ESG 고려 요소
투자자산 ESG 적합성 (ESG Sui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 발행 · 운용기관의 ESG 관련 인증 취득 여부 · 발행 · 운용기관이 투자대상 자산으로 확보한 재원의 ESG 분야투자 여부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ther the investment asset issuance and management institution obtains ESG-related certification · Whether the institution invests in ESG fields
환경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오염, 에너지 등 발행 · 운용기관의 환경 관련 활용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vironmental utilization of institutions (climate change, pollution, energy, etc.)
사회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건, 공동체, 다양성 등 발행 · 운용기관의 사회 관련 활동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activities of institutions (working conditions, communities, diversity, etc.)
지배구조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보상, 부패 등 발행 · 운용기관의 지배구조 관련 활동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ance-related activities of institutions (Board of directors, compensation, corruption, etc.)

부 칙 <20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일부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3일부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25일부부터 시행한다. 마침.